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35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서삼석·박홍배·정을호

이개호 • 박수현 • 김원이

위성곤 • 이병진 • 문대림

소병훈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농약·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 등록 단계에서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농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구매이력 확인에 사용·활용·제공하고 있으나,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농약등 구매자에 대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간 차이로 인해 농약 판매·구매이력 확인에 어려움이었음.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익적 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법률 제 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이름·주소·연락처"를 "이름·주소·연락처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를 "수집·분석 및 관리(등록신청서류의 관리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를 "농약등의 취급·판매 또는 구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을 "안전사용, 취급기준 또는 유해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3조의3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3.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판매・구매 정보의 기	제23조의2(판매・구매 정보의 기
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	록 및 보존 등) ①
수입업자・판매업자가 농약등	
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	
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	<u>.</u>
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 • 포	
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	1
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u>이름 • 주</u>	<u>이름 • 주</u>
소 · 연락처	소·연락처·생년월일·성별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	구축·운영 등) ①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u>농약</u> 제조업·수입업·판매
 1. <u>농약등</u>

 업·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

 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의 수집 및 관리

- 2. <u>농약</u>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3. 등록된 <u>농약의 판매 또는 구</u> 매에 대한 정보 관리
- 4. 농약등의 <u>안전사용 또는 취</u> 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5. (생 략)<신 설>
- 6. (생략)
- ②・③ (생 략)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1. 6 76
2. 농약등
<u>수집·분석 및 관리(등</u>
록신청서류의 관리를 포함한
<u>다)</u>
3 <u>농약등의 취급·판매</u>
<u>또는 구매</u>
4 <u>안전사용, 취급기</u>
<u>준 또는 유해성</u>
5. (현행과 같음)
5의2.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
계의 작성 및 공표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4)
a. 5. a. 5
<u>제1항제5호</u>
<u>및 제5호의2</u>
⑤
1. (현행과 같음)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지급 관련 농약의 판매・구매 이력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률」 및 「임업·산림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 설>

⑥ ~ ⑨ (생 략)

3.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 의 작성 및 공표

⑥ ~ ⑨ (현행과 같음)